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1:
법안발의편

제20대 국회 법안 발의

- 제19대 국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

2017. 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I 들어가는 말

국회의 입법 기능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으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은 왕성해지고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총 1만8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1년 평균 4천500여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안이 가결되어 국민생활에 적용된 건은 1천775건으로 이는 전체 발의 법률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 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를 일종의 성과로 인식하는 풍조로 인해 과잉입법을 양산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법안의 양적 팽창에 따른 법안 내용 분석 결과, 과잉입법의 상당수가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가결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입법 양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작년 5월 출범한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입법, 일반국정, 재정, 외교, 윤리 등 제반 분야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단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한다.

II 본론

1. 19대 국회 입법현황

제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 4년 동안 총 발의된 건수는 1만7천822건이다(【표 1】 참조). 이 중 의원발의가 1만5천444건이고 정부 제출은 1천93건이다. 전체 발의건수 중 처리건수는 1만7천821건이며, 이 중 가결은 1천775건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표 1】 제19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	법률반영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 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총계	17,822	17,821	7,429	1,775	1,018	4,636	10,392	3	10,190	172		27	1
의원	15,444	15,444	5,346	371	763	4,212	10,098	1	9,899	172		26	
위원장	1,285	1,284	1,280	1,275	5		4	1	3				1
정부	1,093	1,093	803	129	250	424	290	1	288			1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2017.2.21)

반면, 전체 접수 법안 중 상당수인 1만여 건은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법안의 58%, 즉 반 이상이 폐기되었다. 가결에서도 기존의 법안에서 단순 문구, 단어, 숫자 변경이 주가 되는 이른바 ‘정비 법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안의 질적 향상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2.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2016년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 약 9개월이 지났다. 2017년 2월 21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 건수는 5천502건이다. 한 달 평균 610여건이 발의 된 셈이다. 이 중 564건(10.2%)이 처리되었고, 처리 중 가결은 296(5.3%)건이며, 대안반영법률안은 411건이다(【표 2】 참고).

【표 2】 제20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2016.5-2017.2)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	법률반영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 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총계	5,502	789	707	184	112	411	82						
의원	5,025	564	482	42	74	366	82		25	57			4,416
위원장	121	121	121	120	1								
정부	356	104	104	22	37	45							252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2017.2.21)

한편, 같은 기간 동안의 제19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제19대 국회는 개원 9개월 동안 3천6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이 중 445건(12%)이 처리되었고, 처리 중 148건(4%)이 가결되었으며, 240건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표 3】 참조).

제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법안 발의 건수는 제20대 국회가 9개월 동안 5천502건 발의한 반면 제19대 국회는 3천621건이 발의되어 약 1천881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제20대 국회에서는 약 51%의 법안발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법안 처리율은 제19대 국회는 12%, 제20대 국회는 10.2%이며, 가결율은 제19대 국회가 4%, 제20대 국회가 5.3%로 처리율과 가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제19대 국회 법안처리현황(2012.5-2013.2)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	법률반영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총계	3,621	445	338	95	53	240	57						
의원	3,264	312	257	17	29	211	55		22	28		5	
위원장	57	57	57	57									
정부	300	76	74	21	24	29			1			1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17.2.21)

3. 발의 법안 내용

법안의 양적 팽창에 따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법안 발의 ‘구태(舊態)’는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보편적인 성과주의 법률안은 이른바 ‘정비 법안’으로 현행법에서 단순히 숫자나 문장을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2호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여 제출했다. 이 같은 예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선박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다수다(<붙임> 참고).

또한 단순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31조 3항의 “가도로”를 “임시도로”로 변경한 것이 전부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현행 제 11조 3항의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다. 이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이삭줍기’ 법안으로 과거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중에서 유효한 것들을 골라 재 발의하는 형식이다. 일부 재선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요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던 법안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붙임>

참고).

Ⅲ 결론

제20대 국회는 개원한지 9개월 만에 5천502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 달 평균으로는 약 610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러한 비율로 법안이 발의된다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약 2만9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이 58%인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법안발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모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의 양적 팽창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실적 쌓기의 명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 시 법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양적인 평가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발의와 처리의 전 과정을 통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그대로 치러야 하며 반면 중점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공청회나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민도와는 동떨어진 법안이 되거나 특정 집단만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등 국회 입법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이 법안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법안 발의 전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법안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역대 국회와 같이 성과위주의 입법활동이 지속된다면 법안이 대거 폐기되는 낭비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 초기 법안발의에 대한 현실적인 장치마련을 통해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붙임>

1. 정비법안

[표 1] 법정형의 편차 조정 관련 법안 예시

연번	의안명	발의일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내용예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u>3천만원</u> ----- -----.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내용예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 ----- <u>3천만원</u> ----- -----.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연번	의안명	발의일
1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1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내용예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 -----2천만원----- -----.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내용예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연번	의안명	발의일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 ----- -----3천만원----- -----.
3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3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4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08.29
4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5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16.08.29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5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53	체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8.29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16.08.2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55	(내용예시)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번	의안명	발의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 ----- ----- -----7천만원----- -----.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협박죄) ----- ----- ----- ----- ----- -----5천만원-----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내용예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56	현 행	개 정 안
	漁業資源保護法	어업자원보호법
	第3條(罰則) 前條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그 所有 또는 所持하고 있는 漁船, 漁具, 採捕物, 養殖物 및 그 製品은 이를 沒收한다.	第3條(罰則) ----- -----懲役 또는 3천만원以下의----- ----- ----- -----.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11.01
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16.11.01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6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6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01

연번	의안명	발의일				
	<p>(내용예시)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p> <table border="1" data-bbox="248 611 1150 1084"> <thead> <tr> <th data-bbox="248 611 788 663">현행</th> <th data-bbox="788 611 1150 66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48 663 788 1084">제1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td> <td data-bbox="788 663 1150 1084">제11조 ③ ----- ----- ----- ----- 알게 ----- 된 ----- ----- ----- 제16조 2. ----- 알게 된 -----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1조 ③ ----- ----- ----- ----- 알게 ----- 된 ----- ----- ----- 제16조 2. ----- 알게 된 ----- -----	
현행	개정안					
제1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1조 ③ ----- ----- ----- ----- 알게 ----- 된 ----- ----- ----- 제16조 2. ----- 알게 된 -----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01.02				
6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 <p>(내용예시)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체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p> <table border="1" data-bbox="248 1480 1150 1823"> <thead> <tr> <th data-bbox="248 1480 788 1532">현행</th> <th data-bbox="788 1480 1150 1532">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48 1532 788 1823">제23조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td> <td data-bbox="788 1532 1150 1823">제23조 ③ ----- ----- ----- ----- 통 보 하 거 나 -----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3조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 ③ ----- ----- ----- ----- 통 보 하 거 나 ----- -----	16.06.15
현행	개정안					
제23조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 ③ ----- ----- ----- ----- 통 보 하 거 나 -----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06.15				
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16.06.15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6.15				

연번	의안명	발의일
	(내용예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② ----- ----- ----- ----- 1. -----피성년후견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2.08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6.12.08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2.08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12.0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내용예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7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23조(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내용예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의2).	
	현 행	개 정 안
8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연번	의안명	발의일
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내용예시)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8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3. <u>금치산자·한정치산자</u>	제8조(결격사유 등) ----- ----- ----- 3.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1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16.11.28
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2.01
2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내용예시)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내용예시)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결격사유) ① -----

연번	의안명	발의일
	<p>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금치산자·한정치산자</p>	<p>----- ----- ----- ----- ----- ----- ----- ----- ----- -----</p> <p>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p>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내용예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0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21
	(내용예시)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현 행	개 정 안
	<p>第6條(無能力者의 營業과 登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p> <p>第7條(無能力者와 無限責任社員)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때에는 그 社員資格으로 因한 行爲에는 能力者로 본다.</p> <p>第8條(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 ① 法定代理人이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를 爲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p> <p>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第6條(제한능력자의 營業과 登記) ----- -----<u>피한정후견인이</u>----- -----</p> <p>第7條(제한능력자와 無限責任社員) ----- -----<u>피한정후견인이</u>----- -----</p> <p>第8條(法定代理人에 依한 營業의 代理) ① ----- -----<u>피한정후견인</u>-----<u>피성년후견인을</u>----- -----</p> <p>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p>

연번	의안명	발의일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3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1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1
3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16.11.11
38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5
	(내용예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7호).	
39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u>금치산자</u> 또는 <u>한정치산자</u>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5
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5
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1.11
	(내용예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43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 ----- ----- ----- ----- ----- ----- 2.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 ----- ----- -----

연번	20대 발의 법안	19대 발의, 임기만료폐기 법안
	<p>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p>	<p>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p>
2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06.24)_대안반영폐기</p> <p>「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04.29)</p> <p>「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p>
3	<p>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p> <p>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p> <p>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p> <p>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p>	<p>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p> <p>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p> <p>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p> <p>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p>
4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정의화의장 발의)

연번	20대 발의 법안	19대 발의, 임기만료폐기 법안
	<p>「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법률 제13004호)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고 있으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p> <p>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무너진 인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통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p> <p>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p>	<p>「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법률 제13004호)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p> <p>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무너진 인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통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p> <p>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p>
5	<p>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11.08)</p> <p>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p> <p>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p> <p>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p>	<p>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03.20)</p> <p>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p> <p>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p> <p>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p>
6	<p>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09.22)</p> <p>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p>	<p>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02.03)</p> <p>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p>

연번	20대 발의 법안	19대 발의, 임기만료폐기 법안
	<p>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p> <p>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음.</p> <p>이에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p>	<p>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p> <p>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p>

* 위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임